#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098

발의연월일: 2025. 4. 24.

발 의 자: 강경숙·최민희·정춘생

박은정 · 김준형 · 황운하

김재원 • 이해민 • 김선민

신장식 · 서왕진 · 진선미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·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'개별화교육'으로 정의하며, 매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.

개별화교육계획은 각급학교의 장이 작성해야 할 법정 문서로서 현재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은 학교의 선호에 따라 수기를 활용하거나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(이하 "교육정보시스템"이라 함)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병용되고 있어 개별화교육계획의 체계적인 보존·이관 등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.

이에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22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2항"을 "제2항 및 제5항"으로, "수립·실시"를 "수립·실시·처리"로 한다.

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또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유치원의 경우에는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개별화교육) ① ~ ④ (생	제22조(개별화교육) ① ~ ④ (현
략)	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
	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
	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2에
	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또는
	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30조의4
	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
	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
	유치원의 경우에는 「공공기록
	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	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기록생
	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
	<u>수 있다.</u>
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	<u>⑥</u>
원팀의 구성, <u>제2항</u> 에 따른 개	<u>제2항 및 제5항</u> -
별화교육계획의 <u>수립・실시</u> 등	<u>수립</u>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	<u>•실시•처리</u>
부렁으로 정한다.	